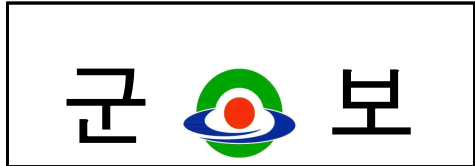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77호 2023. 10. 16.(월)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예천군 조례 제2576호)
- 예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577호)
-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578호)
- 예천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579호)

규 칙

- 예천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예천군 규칙 제1321호)

공 고

- 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3-1297호)
-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3-1305호)
-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3-1308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담당관(전화 650-6065)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1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76호

예천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천군 지역가입자로서,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 세대
4.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정 세대(단, 세대원이 21세 이상이 되더라도 군복무 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제3조(지원내용)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 ① 군수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저소득 주민의 자산 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납기일 10일 전까지 청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료 청구 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납부 마감일 전까지 지원한다.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조사 결과 제2조에서 정한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제7조(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확보)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

나. 보험료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안 제2조 및 안 제3조)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정 세대 등
- 지원내용: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다.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방법, 환수 등(안 제4조~안 제7조)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
- 지원방법 : 대상자는 납기일 10일전까지 보험료를 청구하고, 군수는 적정성을 검토한 후, 납부 마감일 전까지 지원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환수 조치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1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77호

예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예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관할 자율방범대 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 활동 증진 및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대”란 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4. “자율방범활동”이란 법 제7조에 규정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가 3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
2. 제1항의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
4.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파렴치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5. 그 밖에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신청 및 정산)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를 마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로 한다.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군정 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을 선정하여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방범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자율방범 연합대를 포함한다)는 이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로 본다.

◇개정이유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 자율방범대 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치안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용어의 뜻 정비

나. 자율방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안 제3조)

다.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 및 정산

라. 지원대상 규정(안 제5조)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고를 마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마.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예산 지원에 따른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1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78호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사무인계 또는 미결 업무 처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직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
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행사·산불비상근무”를 “행사·비상근무·선거업무 지
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의장은 공무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별
표 4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의 경조사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1조제5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¹⁾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사 망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1
입 양	본인	20

1)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23. 6. 13.)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 사무인계 또는 미결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
- 나. 특별휴가 중 경조사 휴가 사항 추가(안 제11조제5항, 별표 4 신설)
- 다.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신설)
-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

예천군의회의에서 의결된 예천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1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79호

예천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지원표지판”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
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물의
내·외부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4. “지원표시”란 군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축제·행사
또는 구입한 차량·물품·장비 등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문자와 기호 등을 이용한 표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단
체 또는 개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
터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
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재산처분의 제한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
- ②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지원표시판을 설치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표지
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 ②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자명(법인·단체의 경우 명칭과 그 대표자)
 2. 주요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 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를 표기해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①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제8조(차량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차량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해당 차량에 지원표시를 붙여야 한다.

제9조(물품·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물품 또는 장비를 구입하거나 임차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물품 또는 장비 등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물품·장비 등에 지원표시를 붙여야 한다.

제10조(지원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등) ①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원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지원표지판 등의 철거)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하고 시설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제12조(비용부담)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설치·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3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에 관한 관리감독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 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 또는 시설 등부터 적용한다.

◇제정이유

- 예천군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 등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3조)

- 예천군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다. 지원표지판의 종류와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표지판을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누어 규정함.

라. 공사, 시설, 운영표지판 설치 및 지원표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9조)

마. 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및 철거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2조)

바. 표지판 등의 관리감독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예천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0월 1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규칙 제1321호

예천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천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실·과·단·소·읍면”을 “본청 실·과·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을 인용하는 조문이 포함된 「예천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현재의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잘못된 인용조문 변경(안 제4조 및 제6조)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 → 제18조로 변경

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9조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상환능력이 부족하여 상환이행 촉구 및 채권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예천군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

4. 폐지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youngha87@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사회복지과

3) 팩스 : 054-650-620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사회복지과(전화: 054-650-69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 조례안

예천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 조례」에 따라 융자된 자금의 상환, 감면 및 회수(채납처분)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잉여금, 상환금 및 그 외 수입 등은 모두 예천군 일반회계로 전환한다.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과 운행 범위 변경(안 제5조)

- 운행 시간 : 연중 9:00부터 18:00까지→연중무휴 24시간
-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를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및 충청북도 단양군으로 확대

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 운영 시간 : 연중무휴 24시간
- 수행 업무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및 자격 확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운영관리, 특별교통수단 운행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필요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간행물 발간 및 보급,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지원 및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등

다. 이동지원센터 위탁 대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 공공기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단체, 장애인 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 가능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건설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lsm9308@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건설교통과

3) 팩스 : 054-650-633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건설교통과(전화 : 054-650-62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제1
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출발지 예천을 기준으로
대구경북”을 “대구광역시·경상북도”로, “한다”를 “하며, 인접지역인 충청북
도 단양군도 포함한다”로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은 연중 휴무없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운행
차량의 대수는 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제3항 중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 확인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운영관리

4.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지원
7.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 휴무없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간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 등에는 이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중전의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중전의 제7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3. 장애인 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제8조(중전의 제7조)의 제목 “(운영관리)”를 “(이동지원센터의 위탁)”으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9조)제3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운영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및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항----- ----- ----- ----- -----.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 ③ (생략) ④ 특별교통수단은 연중 1일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군수(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가 운행수요를 고려하여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출발지 예천을 기준으로 대구경북 전 지역으로 한다.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교통수단은 연중 휴무없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운행 차량의 대수는 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⑤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 ----- 하며, 인접지역인 충청북도 단양군도 포함한다.
제6조(이용요금) ① · ② (생략)	제6조(이용요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자는 제2항에서 정한 요금을 군수(제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
-----제8조-----

-----.

제7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 확인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특별교통수단 운행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지원

7.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운영관리)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3.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 ④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 휴무없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간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 등에는 이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이동지원센터의 위탁)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3. 장애인 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10조(위탁의 해지) -----

-----.

1. · 2. (생략) 3. 수탁자가 <u>제8조</u> 규정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4. · 5. (생략) <u>제10조</u> · <u>제11조</u>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 <u>제9조</u> ----- ----- 4. · 5. (현행과 같음) <u>제11조</u> · <u>제12조</u> (현행 제10조 및 제 11조와 같음)
--	---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예 천 군 수

1. 조례(규칙)명

- 조례명 :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안)
- 규칙명 :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제정·운영

되었으나, 융자 실적의 저조 및 미상환자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실효성이 없다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

나.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

4. 폐지조례(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새마을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qnrk822@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3) 팩스 : 054-650-609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전화 : 054-650-68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
(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규칙명 :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융자된 자금의 상환, 감면 및 회수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예천군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의 잉여금, 상환금 및 그 외 수입 등은 모두 예천군 일반회계로 전환한다.

예천군 규칙 제 호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